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분열 최소화·사회 통합 추구

38일 장고·진통 끝 전원 뜻모아...불복 여지 차단
법리 검토 막판까지 치밀...결정문 문구 심사숙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분열을 최소화 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숨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지만, 결국 재판관 8인은 최종적으로는 한목소리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적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해 38일 만인 이날 마지막 평의를 거쳐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례할 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평의 돌입 후 약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들의 속이가 길어지면서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3배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예상보다 평의가 장기화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갖은 관측이 나왔다. 의견이 갈린다는 추측이 많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고려할 때 쟁점별로 짚어야 할 과제가 많아 세부 검토에 시일이 걸린다는 해석도 있었다.

헌재가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내부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해서도 재판관 사이에 여러 견해가 오갔다는 설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기일을 잡기 전인 논의 후반부까지도 일부 재판관이 계속 헌법연구관들에게 특정 쟁점에 관한 연구 검토 보고서를 올릴 것을 주문하는 등 쟁점 법리 검토가 막판까지 계속 치밀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이 5명 기각, 2명 각하, 1인 인용 등 제각각 의견을 내며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않은 바 있어 헌재 내부에서 견해차가 생각보다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계엄을 발령한 대통령 사안과 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

인용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파면)	
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상사 대상인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심사할 수 있다
국회 탄핵심판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도 되나	법사위 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결이 무작립하다고 볼 수 없다
불성립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 의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이 적었나	계엄으로 인한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심판으로 인한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평성 내란죄를 제외할 것이 적법한가	사실관계 유지, 적용 법조문 변경은 소추 사유의 질과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가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적 요건을 충족했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제적 요건 위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나	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적법했나	군인 투입 및 지시, 국회의 권한 행사,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침해
계엄 포고령이 적법했나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 위반
선관위 병력 투입은 적법했나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한 것은 적법했나	사법권의 독립 침해
피청구원을 파면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 파면에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부수한 총리 사안은 본질적으로 사안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적지 않았다.

결국 갖은 관측 속에 이날 나온 결론은 만장일치 파면이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고, 국회 군정 투입과 위헌적 포고령 발표,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에서 실제적인 위헌·위법성이 있었다는데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데에도 전원이 뜻을 모았다.

재판관별로 보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도 전체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정 재판관은 결정문을 작성하는 주심 재판관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다수와 견해를 같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 재판관의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관심을 모았지만 이번은 없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절차적 적법성을 비롯해 실제적 쟁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치열하게 다툰 만큼, 불복 빌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평의 과정

에서 법리 검토와 결정문 문구 수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법정의견 결론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정형식),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미선·김형두),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김복형·조한창) 등 3개의 보충의견만을 제시했다.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 하는 반대의견은 아예 없었다. 보충의견은 결론면 동의

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의견’과는 다르다.

헌재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은 계엄사태 이후 진영 간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선고 뒤 불복 등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헌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영록 전남지사 “대선 출마 시사 홍준표, 내란 동조 사과부터”

“반성 없이 현실 외면...국민 통합과 한참 거리가 멀다”

김영록 전남지사(사진)는 5일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선에 임하시려면 국민께 먼저 정중히 사과하시길 바란다. 그제 참 보수의 길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준표 시장의) 윤석열 비상계

엄과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사과 반성하라”며 “대선 출마표를 던지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도 없었다. 윤석열과 똑같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미 과거이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



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은 상처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사과와 반성도 없고 눈앞의 현실조차 외면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 등을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 기록물 대상

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

행 역할을 맡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에 준한다”며 “한 대행과 최 장관의 대행 시절 기록물도 함께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지정기록물’ 지정의 적정성 여부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정부직무공무원 인사 기록물, 개인·관계인의 생명 및 명예 등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대통령-대통령 보좌기관-대통령 자문기관 간 의사소통기록물 중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다만 국회 제재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국회, 외부인 출입제한
파면 후 의원 신변보호

지난해부터 실시 13일까지 유지

국회사무처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자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료를 통해 “지난 3일부터 실시해온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열람,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출입할 수 있게 한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국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커지며 불가피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대통령기록관,尹 대통령 기록물 이관 추진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전 마무리...사실상 두달안 끝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방문해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권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상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대통령 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작업에 돌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주어진 시간이 훨씬 더 촉박하다.

현재 조기 대선 일이 6월 초로 거론되

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관을 마치는 데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돼 정부 기록물을 이관받았던 심상보 전 장관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1년간 해야 하는 작업을 ‘벼락치기’로 마쳐야 하는 셈”이라며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기간을 넘길 경우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책임 소재가 문제가 발생하고, 멸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과 인력 등 행정력을 투입해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

할 수 있다.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이윤리 넘겨받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쳐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하고, 서고에 보존한다.

이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 등을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번에 이관되는 대통령 기록물 대상 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

민형배, 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내고,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尹 “늘 여러분 곁 지킬 것”...지지층 결집 시도

‘반탄’ 지지단체에 메시지 발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지지해온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합성을 기억한다”며 “땀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파면 선고 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현재까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별도의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특히 이날 메시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